

현 장 실 습 협 약 서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는 “학과” 소속 학생들(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실습기간)

- ① 실습기간은 여름방학기간(7월~8월) 중에 실시한다.
- ② 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시하며,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실습 운영)

- ① “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 습득을 위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내용을 수립한다.
- ② “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 (“학과”의 현장실습 운영)

- ① “학과”는 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내용을 취합,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적극 활용한다.
- ② “학과”는 “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및 기본적 소양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 ③ “학과”는 실습 중 “기관”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기관”과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④ “학교”는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4조 (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 ① 실습시간은 “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습장소는 “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5조 (실습비) “기관”은 실습생에게 실습비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실습 운영에 사용한다.

제6조 (실습지도교수 및 실습지도자 지정) 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학과”는 실습지도교수를 지정하고 “기관”은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기관” 또는 “학과”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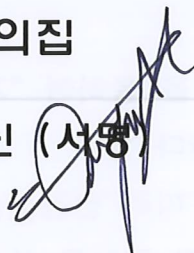
제8조 (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기관”과 “학과”는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7월 1일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오 호 신 (서명)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

학과장 윤 민 화 (서명)

